

#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21. 6. 09.

개정 2021. 12. 21.

개정 2023. 1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정관 제50조에 의거 본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직제 및 정원은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제3조(조직관리)** ① 본회의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은 주무관청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구)** 본회에 두는 사무조직의 기구는“별표 1”과 같다.

**제5조(전무)** ① 본회 사무조직에는 전무 1인을 둔다.  
② 전무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업무에 주력한다. (개정 2021. 12. 21.)

**제6조(사무조직)** ① 사무조직의 부서별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② 국장은 전무를 보좌하고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집행업무를 조정·지원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사무조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장 직속으로 총무팀을 두고, 체육진흥과에 운영팀, 진흥팀, 전문체육육성팀을 둔다. (개정 2021. 12. 21., 2023. 11. 23.)

제7조(사무분장) ① 삭제 (2021. 12. 21.)

②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사회 운영, 엘리트 체육,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총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교실운영 및 종목단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 청소년 및 지정기부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 감사, 인사, 복무, 조직, 규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5. 스포츠클럽, 수익사업, 시설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23.)

제8조(감사) 삭제 (2021. 12. 21.)

제9조(각종위원회 등) 삭제 (2021. 12. 21.)

제10조(보직과 정원) ① 사무조직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 및 사업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1조(직종 및 직급) ① 전무와 국장은 계약직으로 하고, 직원은 일반직으로 하며, 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전무 및 직원의 직급은 “별표3”과 같이 정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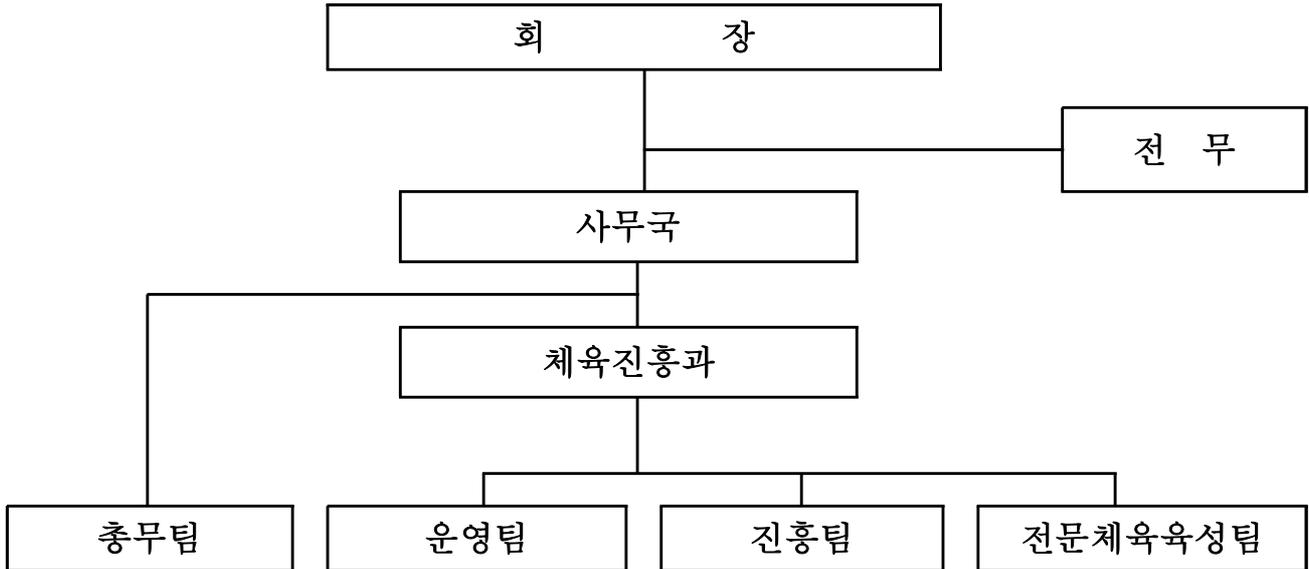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신설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12. 21., 2023. 11. 23.)

## 기구 표



[별표 2] (개정 2021. 12. 21., 2023. 11. 23.)

## 정원 표

구분	계	전무	국장	과장	팀장	사무직	기사	지도자	비고
사무국	29	1	1	1	4	9	1	12	-

[별표 3] (개정 2021. 12. 21., 2023. 11. 23.)

##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직종	직위 또는 직급	직급
계약직	전무	4급
	국장	5급
일반직	과장·팀장	6급
	대리	7급
	주임	8급
	담당	9급
무기계약직	지도자	지도자